

학생진로·심리상담통합관리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대학”이라 한다)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체계적인 취업진로 지도 및 상담을 통해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심리적 건강 및 진로 지도 등에 적절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우수인재를 배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생의 취업·진로, 심리, 생활상담 및 지도와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적용 범위로 한다.

제3조(학생진로·심리상담통합지원) ① 학생의 원활한 학업을 위한 진로·심리 상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학생진로·심리상담통합지원단을 둘 수 있다

② 지원단은 학생처장을 단장으로 하고, 총장이 관련부서 교직원 약간명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.

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④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여 추진한다.

1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통합 및 부서별 운영계획 수립
2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관련 실적 및 성과관리
3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관련 협력체계 구축
4. 학생진로·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

⑤ 지원단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지원부서에 안내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한다.

제4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